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6921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2200662	구자근의원	2024. 6.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 위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2201920	안철수의원	2024. 7.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9.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 위 회부
보호에 관한	2202516	고동진의원	2024. 8. 2.	
법률	2202543	한민수의원	2024. 8. 5.	 - 제41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
일부개정	2202723	권향엽의원	2024. 8. 12.] 세415의 국회(82기회) 세5자 전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031	정연욱의원	2024. 8. 21.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법률안	2203171	김성원의원	2024. 8. 23.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
	2203916	박성훈의원	2024. 9. 11.	위 회부
	2204033	김동아의원	2024. 9. 13.	
	2204760	민형배의원	2024. 10.17.	
	2205389	이철규의원	2024. 11.0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9.)
	2205562	이재관의원	2024. 11.14.	

제41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1.21.) 에서 위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

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제6항 신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 11항 신설).
- 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 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함(안 제14조)
- 자.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 차.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 신기술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 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 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 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 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 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 수·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 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 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해당 국가핵심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제2호"로,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를 "부정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 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제8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전단 중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해외인수·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로 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 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

- ·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의 제목 "(개선권고)"를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선권고를"을 "조치명령을"로, "개선권고의"를 "조치명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를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사용 및 공개"를 "사용·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국 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의2)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을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의3) 중 "특수매체기록"을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7호)중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을 "제11조제6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제10항"으로 한다.

-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
-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1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고시·공고·인증한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 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을 "제1항의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로 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4호 및 제8호"를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6호 및 제7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의 기간 이내에 제9조의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	1
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이나 법인 • 단체의 장을 말한	
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	
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	<u><삭 제></u>
<u>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u>	
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 아. (생 략) <u><신 설></u>

<u>자</u>. (생 략) 2. ~ 4. (생 략)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략)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 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 략)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생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u>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u>

<u>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u>

<u>해양수산신기술</u>

차. (현행 자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치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 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 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 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 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 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 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 <신 설>

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 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 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 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 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의2 (생략)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저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 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u>해당국가핵</u> 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 (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
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기업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u>다.</u>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9조의4</u>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u>해당 국가핵심</u>
<u>기술</u>
<u>미리</u>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 ⑥ (생 략)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 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 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 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 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 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 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 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 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같음)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 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 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생 략)

- 2. <u>제5항</u>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 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 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 금지・원상회복 심의
- 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 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 지·원상회복 심의

<u>⑨</u> (생 략)

<신 설>

①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 · 수

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u> </u>
1. (현행과 같음)
2. 제6항
3. <u>제8항제2호</u> <u>부정승</u>
<u>୍</u> ପି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수출절차를 일부 면
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 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 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등) ① ~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4 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 우 해외인수 합병등이 국가안 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 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⑤ • ⑥ (생략) <신 설>

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 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 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 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 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u>해외인수·합병등에</u> 따른	국
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
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
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u>.</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

⑦・⑧ (생 략)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 인수 · 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 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 수 한 병등에 대하여 중지 · 금 지 ·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야 한다.
- <u>⑧·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합병 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 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 병등을 진행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 · 1의2. (생략)
- 2. <u>제7항</u>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 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 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 원상회복 등 심의
- 3. <u>제7항</u>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 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 4.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 · 합병등의 중지 · 금지 · 원상회복 등 심의

<u>①</u>·<u>②</u> (생 략)

<신 설>

<u> </u>
1.・1의2. (현행과 같음)
2. <u>제8항</u>
3. <u>제8항</u>
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① · ③ (현행 제11항 및 제12항 과 같음)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합 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 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 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 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제13조<u>(개선권고)</u> ①·② (생 략)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 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u>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u> <u>과한다.</u>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 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 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u>(개선권고 등)</u>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u>④</u> <u>제3항</u>
조치명령을 조치명
령의

보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저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 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
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
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1. (현행과 같음)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
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
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4.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

<u>5.</u> 제1호무터 제4호까지에
시용. 고기
<u>사용·공개</u>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
<u>· 알선 · 유인하는 행위</u>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
<u>는 행위</u>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u>সী1ই</u>
부터 제4호까지에
1 1 1 2 1 1 1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하는 행위 5. (생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 9. 제11조의2제1항-----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 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 합병등을 하는 행 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10. 제11조의2제5항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 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 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 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 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

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 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 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 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 · 제7항 및 제11 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생략)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 인) ① (생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u>특수매체기록이</u>
나 원시코드 등	<u>:</u>
이를	
<u>11</u> . <u>제11조제6항</u>	• 제8항 및 제11
조의2제8항·저	<u> 게10항</u>

12. (현행 제8호와 같음)

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 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그 기술을 지정・고시・공 고 · 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 로 간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의4(국외에서의 행위에 대 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물의 유술 및 침해행위 금시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
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
<u>용한다.</u>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u>한다</u> .
②
제1항의 신고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
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태조사)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 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 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 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 관련 해외유 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 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 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 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 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기술지원
- 3. 4. (생략)
- ② (생략)
-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 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1. ~ 8.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 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u>다.</u>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
운영 지원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
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2
②
②
<u>5叫</u>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3의2. (생략) <신설>

- 4. 5. (생략)
- 6. <u>제17조제1항의 규정</u>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 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 행하는 자

7. ~ 10. (생략)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을</u> 지 <u>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u> <u>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u> <u>제3호</u>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u>15억원</u>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
<u>는 자</u>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자
3.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5. (현행과 같음)
6. <u>제17조</u>
7. ~ 10.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이</u>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
<u>65억원</u>

-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 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 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③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 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⑧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단서 신설>

<u><신</u>설>

②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
<u>30억원</u>
·.
③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④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 ⑤ ~ ⑧ (현행과 같음)
에39조(과태료) ①
09年(平川岳) (1)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
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u><신 설></u>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
	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한 자
<u>1</u> . (생 략)	<u>3</u> . (현행 제1호와 같음)
<u><신 설></u>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
	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한 자
<u><신 설></u>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자
<u>2</u> .· <u>3</u> . (생 략)	<u>6</u> .· <u>7</u>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